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 변화*

정진호**

I.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어 있다. 법률적인 쟁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특히 노동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한국경총은 38조, 한국노총은 6조로 추정치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같이 노사간에 민감한 이슈는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경제적 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확대가 경제 전체 및 근로자 1인당 임금 및 노동비용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산업별·사업체규모별·고용형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보다 시의성 및 대표성이 높은 조사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기존의 분석결과와는 어느 정도 상이한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Ⅱ장에서는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를 개관하고, 제Ⅲ장에서는 기업 전체의 노동비용 및 근로자 1인당 임금/노동비용 변화를 분석하며, 제Ⅳ장에서는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 이 글은 2013년 5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h@kli.re.kr).

1) 이에 대해서는 노동리뷰 이번 호의 박지순(2013),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위한 구상」 참조.

Ⅱ. 분석모형

1. 분석방법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의 변화 분석은 다음의 항등식에서 출발한다.

$$\begin{aligned} \text{노동비용} &= \text{직접노동비용}(\text{twg, 임금노동비용}) + \text{간접노동비용}(\text{nwc, 비임금노동비용}) \\ &= \text{임금총액} + \text{퇴직금} + \text{법정복리비} + \text{기타} \end{aligned}$$

$$\begin{aligned} \text{lcs} &= \text{twg} + \text{nwc} \\ &= \text{twg} + \text{ret} + \text{soi} + \text{etc}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임금총액} &= \text{기본급} + \text{통상적수당} + \text{기타수당} + \text{초과급여} + \text{고정상여금} + \text{변동상여금}^2) \\ \text{twg} &= \text{rwg1} + \text{rwg2} + \text{rwg3} + \text{owg} + \text{swg1} + \text{swg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총근로시간} &= \text{소정근로시간} + \text{초과근로시간} \\ \text{twh} &= \text{rwh} + \text{owh} \end{aligned}$$

그런데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시급, 즉 시간당 임금률(hourly wage rate)을 높인다.

기존의 시급³⁾

$$\text{hwg0} = (\text{rwg1} + \text{rwg2})/\text{rwh} = \text{rwg12}/\text{rwh}$$

고정임금 시급 1(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기타수당 포함)

$$\text{hwg1} = (\text{rwg1} + \text{rwg2} + \text{rwg3} + \text{swg1})/\text{rwh} = (\text{rwg12} + \text{rwg3} + \text{swg1})/\text{rwh}$$

고정임금 시급 2(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만 포함)

$$\text{hwg2} = (\text{rwg1} + \text{rwg2} + \text{swg1})/\text{rwh} = (\text{rwg12} + \text{swg1})/\text{rwh}$$

이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라 인상된 시간당 임금률(이하 시급)은 이와 연계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조사통계에서 특별급여 및 고정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특별급여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 그 중에서 고정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사전에 지급조건, 금액 및 시기가 확정되어 지급한 상여금(예, 정기상여금)으로 정의되어 있다.

3)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유급휴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된 각종 임금 및 노동비용 항목을 증가시킨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급 변화에 따른 임금항목의 변화로서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① 초과급여, ② 연차수당⁴⁾, 노동비용의 변화로서 평균임금에 영향을 받는 ③ 퇴직급여, ④ 사회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begin{aligned} \text{① 초과급여 변화 } \Delta \text{ owg} &= (\text{owg2} - \text{owg0}) * 12 \\ &= [(1+\alpha) * \text{hwg2} * \text{owh} - (1+\alpha) * \text{hwg0} * \text{owh}] * 12, \text{ 단, } \alpha = \text{임금할증률} \\ \text{hwg2} &= (1+\beta) * \text{hwg0}, \text{ 단, } \beta = \text{시급변화율} \\ \Delta \text{ owg} &= [(1+\alpha) * (1+\beta) * \text{hwg0} * \text{owh} - (1+\alpha) * \text{hwg0} * \text{owh}] * 12 \\ &= [(1+\beta) * \text{owg0} - \text{owg0}] * 12 \\ &= [\beta * \text{owg0}] * 12 \end{aligned}$$

$$\text{② 연차수당 변화 } \Delta \text{ alp} = (\text{hwg2} - \text{hwg0}) * 8 * \text{미사용연차휴가일수}$$

초과급여 및 연차수당의 변화 모두 직접노동비용(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의 변화를 초래한다.

$$\Delta \text{ ytwg} = \Delta \text{ owg} + \Delta \text{ alp}$$

$$\text{③ 퇴직급여충당금 변화 } \Delta \text{ ret} = (\text{ytwg2} - \text{ytwg0}) / 12$$

$$\text{④ 사회보험료 변화 } \Delta \text{ soi} = (\text{ytwg2} - \text{ytwg0}) * \text{사회보험료율}$$

퇴직급여충당금 및 사회보험료의 변화 모두 간접노동비용(근로자 1인당 연간 간접노동비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Delta \text{ ynwc} = \Delta \text{ ret} + \Delta \text{ soi}$$

앞서 살펴본 ①~④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근로자 1인당 연간 노동비용) 변화에 해당한다.

$$\begin{aligned} \Delta \text{ lcs} &= \Delta \text{ ytwg} + \Delta \text{ ynwc} \\ &= \Delta \text{ owg} + \Delta \text{ alp} + \Delta \text{ ret} + \Delta \text{ soi} \end{aligned}$$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제 전체 임금/노동비용의 증가액은 ① 향후 1년 간 임금/노동비용 증가액으로

$$\sum_{i=1}^N \Delta \text{ lcs}_i = \sum_{i=1}^N \Delta \text{ owg}_i + \sum_{i=1}^N \Delta \text{ alp}_i + \sum_{i=1}^N \Delta \text{ ret}_i + \sum_{i=1}^N \Delta \text{ soi}_i \quad N = \text{근로자수}$$

4) 연차수당은 조사통계에서 기타수당 rwg3에 포함되어 있다.

② 지난 3년간 임금/노동비용 증가액으로

$$\sum_{i=1}^N \Delta lcs_i \cdot w_i = \sum_{i=1}^N \Delta owg_i \cdot w_i + \sum_{i=1}^N \Delta alp_i \cdot w_i + \sum_{i=1}^N \Delta ret_i \cdot ten_i + \sum_{i=1}^N \Delta soi_i \cdot w_i$$

단, $w_i = 3$ if $ten_i \geq 3$
 $w_i = ten_i$ otherwise $ten =$ 실근속연수

단,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은 ‘실근속연수’, 다른 노동비용은 ‘임금채권 근속연수’에 의존 ‘임금채권 근속연수’는 실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3, 그 미만인 경우 실근속연수로 한다.

2. 분석자료

본고에서는 201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개인별 자료를 기본 분석자료로 한다. 이 조사통계에서 조사되지 않는 각종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원자료에 결합한다.

우선, 개인별 자료에서 분리되어 조사되지 않는 특별급여를 2012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대분류×사업체규모별 고정상여금 비율(상용근로자)을 이용하여 고정 및 변동상여금으로 분리하여 원자료에 결합한다. 그리고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사업체규모별로 원자료에 결합한다.

참고로 ①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2.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② 고용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규모<50명 0.25%, 150명≤규모<1,000명 0.65%, 규모≥1,000명 0.85%), 실업급여 : 0.55%, ③ 산재보험료율 : 전산업 동일하게 1.08% 적용(실제 경험료율로 기업별로 상이), ④ 임금채권보장기금 : 0.08%로 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규정 적용 제외(non-regulation) 또는 미준수(non-compliance) 없음을 가정한다.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연간 노동비용 증가율을 추정하는데, 2011년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이용하여 2012년 규모별·항목별로 노동비용을 시계열 연장한다(aging). 단, 이 조사통계에서 조사되지 않는 9인 이하 사업체는 10~29인 사업체의 퇴직금 및 법정복리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본고의 분석대상은 2012년 6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이다. 단, 고용형태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또한 소정 및 초과 실근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이 조사되지 않은 근로자도 제외한다.

〈표 1〉 사회보험료율(2012년)

(단위: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채기금
전 체	9.65	4.50	3.09	0.90	1.08	0.08
1~4인	9.55	4.50	3.09	0.80	1.08	0.08
5~9인	9.55	4.50	3.09	0.80	1.08	0.08
10~29인	9.55	4.50	3.09	0.80	1.08	0.08
30~99인	9.55	4.50	3.09	0.80	1.08	0.08
100~299인	9.80	4.50	3.09	1.05	1.08	0.08
300인 이상	10.05	4.50	3.09	1.30	1.08	0.08

Ⅲ. 분석결과

분석에 선행하여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임금내역별 구성비는 통상임금 78.1%, 초과급여 5.6%, 고정상여금 7.6%(부표 2 참조)로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일수록 통상임금의 비율은 낮지만 초과급여/고정상여금의 비율은 높다. 보다 상세한 규모, 고용형태, 산업별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 실태는 <부표 1-1> 및 <부표 1-2>에 나타나 있다.

1. 기업 전체 노동비용의 변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 전체의 임금 및 노동비용의 증가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 경우, 즉 고정임금 시급 1에 따른 기업부담 노동비용 증가액은 21.9조 원으로 추정된다(부표 3, 4, 5 참조). 특히 초과급여 증가액이 13.0조 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59%,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액이 11.6조 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53%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증가액이 13.2조 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둘째,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만을 포함한 경우, 즉 고정임금 시급 2에 따른 기업부담 노동비용 증가액은 14.6조 원으로 추정된다(부표 3, 4, 5 참조). 특히 초과급여 증가액이 8.7조 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59%,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증가액이 7.9조 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증가액이 9.5조

원으로 전체 노동비용 증가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대기업, 정규직, 제조업에서 크게 발생한다. 물론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대한 가정에 따라 노동비용 증가액이 14.6조 원에서 21.9조 원으로 약 50% 정도 차이가 나지만, 노동비용 증가액의 대부분은 대기업, 정규직, 제조업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표 2〉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액

(단위: 억 원)

		전체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초과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총담금		사회보험료	
		고정상여 기타수당	고정 상여								
향후 1년	민간 전체	61,182	40,551	40,070	26,614	11,699	7,696	4,314	2,859	5,099	3,382
	1~4인	738	406	201	110	425	234	52	29	60	33
	5~9인	1,545	923	695	415	616	368	109	65	125	75
	10~29인	5,775	3,558	3,587	2,210	1,312	808	408	251	468	288
	30~99인	9,862	6,117	6,848	4,247	1,519	942	697	432	799	496
	100~299인	13,211	9,142	8,976	6,211	2,207	1,528	932	645	1,096	758
	300인 이상	30,051	20,405	19,764	13,420	5,621	3,816	2,115	1,436	2,551	1,732
지난 3년	민간 전체	158,279	105,492	89,846	59,910	25,757	17,051	31,265	20,928	11,411	7,602
	1~4인	1,205	663	305	168	647	356	162	89	91	50
	5~9인	3,024	1,807	1,256	750	1,113	665	429	256	226	135
	10~29인	11,406	7,026	6,459	3,979	2,362	1,455	1,743	1,074	842	519
	30~99인	22,116	13,716	13,780	8,546	3,056	1,895	3,672	2,277	1,608	997
	100~299인	33,669	23,300	20,087	13,901	4,940	3,419	6,189	4,283	2,453	1,697
	300인 이상	86,860	58,980	47,959	32,565	13,639	9,261	19,071	12,950	6,191	4,204
향후 1년 & 지난 3년	민간 전체	219,461	146,042	129,916	86,523	37,456	24,747	35,579	23,788	16,510	10,984
	1~4인	1,943	1,069	506	278	1,072	590	214	118	151	83
	5~9인	4,569	2,730	1,951	1,166	1,729	1,033	538	321	351	210
	10~29인	17,181	10,584	10,046	6,188	3,673	2,263	2,151	1,325	1,310	807
	30~99인	31,978	19,833	20,628	12,793	4,575	2,837	4,369	2,710	2,407	1,493
	100~299인	46,880	32,442	29,063	20,112	7,148	4,947	7,121	4,928	3,549	2,456
	300인 이상	116,911	79,385	67,723	45,985	19,260	13,078	21,186	14,386	8,742	5,936

2. 근로자 1인당 임금/노동비용의 변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근로자 1인당 임금 및 노동비용의 증가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로 산업, 규모,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다(부표 6 참조). 이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아지고(1~4인 0.1%, 300인 이상 1.9~2.9%),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증가율이 높아지며(300인 이상 정규직 2.2~3.2%, 비정규직 0.2~0.6%), 제조업일수록 임금증가율은 2.1~2.9%로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대규모, 정규직일수록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증가율이 높다. 이는 통상임금의 비율은 낮고 고정상여금 및 초과급여의 비율이 높은 이들 부문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긴 초과근로시간과 결합하여 초과급여가 크게 높아져 해당 부문의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짐을 시사한다.

〈표 3〉 근로자 1인당 향후 1년간 임금증가율

(단위 : %)

	임금증가율			임금증가율	
	고정상여 &기타수당	고정상여		고정상여 &기타수당	고정상여
민간 전체	1.4	0.9			
1~4인	0.1	0.1	A. 농림어업	0.5	0.4
5~9인	0.3	0.2	B. 광업	4.9	2.5
10~29인	0.7	0.4	C. 제조업	2.9	2.1
30~99인	1.2	0.8	D. 전기가스업	1.9	1.5
100~299인	2.1	1.5	E. 폐기물환경	1.0	0.5
300인 이상	2.8	1.9	F. 건설업	0.3	0.2
1~4인	정규직	0.2	G. 도소매업	0.5	0.3
	비정규	0.0	H. 운수업	2.5	1.5
5~9인	정규직	0.4	I. 숙박음식업	0.1	0.1
	비정규	0.1	J. 정보서비스	0.4	0.3
10~29인	정규직	0.8	K. 금융보험업	1.4	1.0
	비정규	0.2	L. 부동산임대	0.3	0.2
30~99인	정규직	1.4	M. 기술서비스	0.5	0.3
	비정규	0.5	N. 사업지원	1.1	0.6
100~299인	정규직	2.4	P. 교육서비스	0.3	0.2
	비정규	0.6	Q. 보건복지	0.7	0.4
300인 이상	정규직	3.2	R. 예술여가	0.6	0.4
	비정규	0.6	S. 기타서비스	0.3	0.2

둘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0.8~1.3%로 추정된다. 근로자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0.9~1.4%, 간접노동비용은 0.6~0.9% 증가하여 전체 노동비용은 0.8~1.3% 증가하는데,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노동비용 증가율이 높아진다(1~4인 0.1%, 300인 이상 1.8~2.6%).

〈표 4〉 근로자 1인당 향후 1년간 노동비용 증가율

(단위 : %)

	전체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고정상여 & 기타수당	고정상여만 포함	고정상여 & 기타수당	고정상여만 포함	고정상여 & 기타수당	고정상여만 포함
전체	1.3	0.8	1.4	0.9	0.9	0.6
1~4인	0.1	0.1	0.1	0.1	0.1	0.0
5~9인	0.3	0.2	0.3	0.2	0.2	0.1
10~29인	0.7	0.4	0.7	0.4	0.5	0.3
30~99인	1.1	0.7	1.2	0.8	0.8	0.5
100~299인	1.9	1.3	2.1	1.5	1.1	0.8
300인 이상	2.6	1.8	2.8	1.9	1.7	1.2

3. 기존 분석결과와의 비교

기존 분석결과와의 비교는 비교대상 임금/노동비용 항목의 차이 이외에 분석에 이용된 자료, 전제된 가정 등의 차이에 따라 용이하지 않다. 다만 분석대상이 된 기간 및 임금/노동비용 항목의 상이함에 따른 격차도 존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표 5〉 주요 노사단체의 분석결과와 비교

(단위 : 조)

		전체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초과급여	연차수당	변동상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한국경총	향후 1년	8.8	5.9	1.0	0.8	0.6	0.6
	지난 3년	29.7	17.7	3.0	2.3	4.9	1.8
한국노총	향후 1년						
	지난 3년		5.7				
본 연구	향후 1년	4.1~6.1	2.7~4.0	0.8~1.2		0.3~0.4	0.3~0.5
	지난 3년	10.5~15.8	6.0~9.0	1.7~2.6		2.1~3.1	0.8~1.1

주 : 사회보험료에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포함.
 자료 : 한국경총 및 한국노총.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향후 1년 및 지난 3년을 합산하면 14.6~21.9조 원으로 추정된다.⁵⁾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 경우, 즉 고정임금 시급1에 따른 기업부담 노동비용 증가액은 21.9조 원으로 추정된다(부표 3, 4, 5 참조).
- ②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만을 포함한 경우, 즉 고정임금 시급2에 따른 기업부담 노동비용 증가액은 14.6조 원으로 추정된다(부표 3, 4, 5 참조).
- ③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한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로 산업, 규모,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지만(부표 6 참조), 전반적으로 제조업, 대규모, 정규직 등 고정상여금의 비율이 높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긴 초과근로시간과 결합하여 초과급여가 크게 높아져 해당 부문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짐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 변화를 포함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보다 정확한 추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향후 변화에 대한 가정의 합리성,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시의성, 대표성 등에 의존한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의 ‘실질적’인 인상에 따른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과정 등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분배,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5) 본고의 수치는 정부부문(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전체 민간부문에 대한 추정치이다. 참고로 2012년 현재 경제 전체의 피용자보수(정부부문 포함 전체 임금근로자 노동비용)는 583조 원이다(한국은행 참조).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2년 원자료.
_____,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년 원자료.
_____, 「2011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보고서」, 2012.
한국경총,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2013.
한국노총 내부자료(한겨레 2012. 5. 20).

〈부표 1-1〉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2012년)

(단위: 천 명, 천 원/월)

	근로 자수	임금 총액	정액 급여	근로조건			초과 급여	특별 급여	고정 상여	변동 상여	
				기본급	통상 임금	기타 수당					
민간 전체	12,447	2,527	2,075	1,783	1,973	102	141	311	192	119	
1~4인	3,099	1,505	1,437	1,362	1,410	26	14	55	32	23	
5~9인	1,607	2,136	1,936	1,743	1,878	59	46	154	89	65	
10~29인	2,362	2,430	2,093	1,816	2,003	90	112	225	142	83	
30~99인	2,137	2,680	2,205	1,848	2,101	104	210	265	168	97	
100~299인	1,450	3,062	2,367	1,909	2,229	139	259	435	314	122	
300인 이상	1,793	4,154	2,890	2,319	2,633	257	304	960	557	403	
1~4인	정규직	1,844	1,832	1,725	1,616	1,687	38	17	89	52	37
	비정규	1,254	1,025	1,012	990	1,004	8	9	4	2	2
5~9인	정규직	1,290	2,335	2,100	1,877	2,035	65	48	186	107	79
	비정규	317	1,329	1,269	1,196	1,237	32	35	24	15	9
10~29인	정규직	1,810	2,732	2,325	1,987	2,216	109	123	283	179	104
	비정규	552	1,441	1,331	1,257	1,305	25	76	35	22	12
30~99인	정규직	1,733	2,917	2,368	1,963	2,257	111	230	320	202	117
	비정규	403	1,662	1,508	1,356	1,432	75	123	31	20	12
100~299인	정규직	1,224	3,309	2,517	2,026	2,374	143	286	506	365	141
	비정규	226	1,721	1,558	1,279	1,444	114	110	53	38	15
300인 이상	정규직	1,549	4,513	3,081	2,466	2,806	275	340	1,093	634	459
	비정규	244	1,878	1,681	1,385	1,540	141	80	118	71	46
A. 농림어업	30	2,504	2,127	1,901	2,058	70	54	323	203	120	
B. 광업	14	3,070	2,351	1,752	2,043	307	334	386	350	35	
C. 제조업	3,186	2,882	2,061	1,768	1,942	119	332	489	296	193	
D. 전기가스업	55	4,904	3,537	3,198	3,418	119	293	1,075	568	506	
E. 폐기물환경	63	2,462	2,112	1,731	2,012	100	167	183	120	62	
F. 건설업	1,010	2,333	2,137	1,931	2,076	61	54	141	93	48	
G. 도소매업	1,551	2,204	1,938	1,718	1,855	83	60	206	118	88	
H. 운수업	597	2,654	2,050	1,607	1,884	166	206	399	280	119	
I. 숙박음식업	925	1,248	1,186	1,133	1,169	17	27	36	23	13	
J. 정보서비스	423	3,352	2,920	2,558	2,815	105	56	375	213	163	
K. 금융보험업	470	4,399	3,266	2,542	2,994	272	83	1,050	642	408	
L. 부동산임대	333	1,797	1,657	1,487	1,608	49	41	98	59	39	
M. 기술서비스	739	3,483	3,016	2,596	2,895	120	66	402	224	178	
N. 사업지원	740	2,148	1,828	1,503	1,711	117	124	197	128	68	
P. 교육서비스	604	2,532	2,327	1,959	2,257	71	40	165	118	47	
Q. 보건복지	1,010	2,182	1,918	1,567	1,796	122	88	175	133	42	
R. 예술여가	166	1,718	1,487	1,332	1,442	45	91	140	92	49	
S. 기타서비스	531	1,782	1,627	1,462	1,568	59	38	117	73	44	

주: 고정/변동상여는 2012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대분류 × 사업체규모별 고정상여금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2년 원자료.

〈부표 1-2〉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2012년)

(단위 : 시간/월, 원/시간, 년, 일, %)

	총근로 시간	근로시간		시급(통상임금)			근속 연수	연차휴가 부여일수	연차휴가 사용일수	사회 보험료	
		소정 근로	초과 근로	기존	고정상여 기타수당	고정 상여					
민간 전체	173.7	162.1	11.6	12,504	14,345	13,704	5.1	9.4	3.8	9.65	
1~4인	163.6	162.1	1.5	9,014	9,362	9,205	3.1	6.6	1.7	9.55	
5~9인	173.4	169.3	4.1	11,393	12,289	11,929	3.9	8.3	2.9	9.55	
10~29인	172.9	162.8	10.1	12,569	13,987	13,442	4.3	8.4	3.5	9.55	
30~99인	180.9	161.5	19.4	13,180	14,860	14,222	5.3	9.9	4.7	9.55	
100~299인	182.8	160.7	22.1	14,182	17,010	16,139	6.6	11.9	5.1	9.80	
300인 이상	176.7	156.6	20.0	17,283	22,502	20,827	9.0	14.0	6.5	10.05	
1~4인	정규직	188.4	186.7	1.7	9,395	9,921	9,702	4.5	9.5	2.6	9.55
	비정규	127.0	126.0	1.0	8,453	8,539	8,474	1.1	2.2	0.3	9.55
5~9인	정규직	181.2	177.0	4.2	11,824	12,856	12,469	4.6	9.7	3.5	9.55
	비정규	141.7	137.8	3.9	9,638	9,983	9,729	1.3	2.7	0.8	9.55
10~29인	정규직	181.3	170.5	10.8	13,292	15,048	14,389	5.2	10.2	4.3	9.55
	비정규	145.3	137.8	7.5	10,197	10,507	10,337	1.2	2.7	1.0	9.55
30~99인	정규직	186.0	165.2	20.8	13,796	15,727	15,052	6.1	11.4	5.4	9.55
	비정규	158.9	145.8	13.1	10,534	11,137	10,659	1.6	3.8	1.4	9.55
100~299인	정규직	187.7	163.7	24.0	14,632	17,799	16,906	7.5	13.4	5.8	9.80
	비정규	156.4	144.7	11.7	11,750	12,738	11,988	1.7	3.8	1.9	9.80
300인 이상	정규직	181.3	159.4	21.9	17,738	23,529	21,768	10.1	15.6	7.2	10.05
	비정규	147.0	139.1	8.0	14,401	15,989	14,859	2.2	4.3	2.1	10.05
A. 농림어업	160.2	155.9	4.3	13,351	15,036	14,612	6.7	9.8	4.2	9.58	
B. 광업	191.3	166.4	24.9	12,575	17,225	14,952	8.2	13.1	4.4	9.67	
C. 제조업	192.7	164.6	28.1	11,927	14,525	13,788	6.3	11.4	4.5	9.70	
D. 전기가스업	174.7	161.5	13.2	21,269	25,563	24,817	14.2	17.8	6.8	9.79	
E. 폐기물환경	183.8	171.0	12.8	11,924	13,247	12,647	5.6	11.5	4.8	9.57	
F. 건설업	152.5	148.9	3.6	14,189	15,155	14,762	3.2	6.4	2.7	9.60	
G. 도소매업	176.6	171.2	5.4	11,028	12,238	11,744	4.1	8.5	3.1	9.58	
H. 운수업	180.0	164.2	15.8	11,702	14,582	13,473	6.8	12.0	4.3	9.70	
I. 숙박음식업	165.5	162.6	2.9	7,217	7,455	7,355	1.8	3.7	1.0	9.56	
J. 정보서비스	161.7	157.7	4.0	17,747	19,778	19,100	5.9	10.5	5.9	9.70	
K. 금융보험업	164.1	159.9	4.2	18,862	24,595	22,896	9.5	14.5	5.0	9.67	
L. 부동산임대	195.6	192.4	3.2	9,070	9,696	9,418	3.9	8.4	2.6	9.58	
M. 기술서비스	165.6	160.7	4.9	18,144	20,304	19,550	5.8	11.2	5.7	9.72	
N. 사업지원	170.9	159.4	11.6	10,978	12,584	11,786	4.2	8.9	3.5	9.70	
P. 교육서비스	139.7	136.4	3.3	18,340	19,541	19,080	6.1	9.6	2.4	9.68	
Q. 보건복지	168.8	162.4	6.4	11,165	12,731	11,984	4.0	8.4	5.1	9.66	
R. 예술여가	163.2	155.7	7.5	9,554	10,413	10,117	3.1	6.3	2.9	9.60	
S. 기타서비스	168.6	165.3	3.3	9,741	10,525	10,178	4.2	8.2	2.8	9.56	

주 : 연차휴가 및 사회보험료율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를 이용하여 추정.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2년 원자료.

〈부표 2〉 임금내역별 구성비(2012년)

(단위 : %)

	임금 총액	정액 급여	정액 급여			초과 급여	특별 급여	고정 상여	변동 상여	
			기본급	통상 임금	기타 수당					
민간 전체	100.0	82.1	70.5	78.1	4.0	5.6	12.3	7.6	4.7	
1~4인	100.0	95.4	90.5	93.7	1.7	0.9	3.6	2.1	1.5	
5~9인	100.0	90.6	81.6	87.9	2.7	2.1	7.2	4.2	3.0	
10~29인	100.0	86.1	74.7	82.4	3.7	4.6	9.3	5.9	3.4	
30~99인	100.0	82.3	69.0	78.4	3.9	7.8	9.9	6.3	3.6	
100~299인	100.0	77.3	62.4	72.8	4.5	8.5	14.2	10.2	4.0	
300인 이상	100.0	69.6	55.8	63.4	6.2	7.3	23.1	13.4	9.7	
1~4인	정규직	100.0	94.2	88.2	92.1	2.1	1.0	4.9	2.9	2.0
	비정규	100.0	98.7	96.6	97.9	0.8	0.9	0.4	0.2	0.2
5~9인	정규직	100.0	90.0	80.4	87.2	2.8	2.1	8.0	4.6	3.4
	비정규	100.0	95.5	90.0	93.1	2.4	2.7	1.8	1.1	0.7
10~29인	정규직	100.0	85.1	72.7	81.1	4.0	4.5	10.4	6.5	3.8
	비정규	100.0	92.3	87.2	90.6	1.8	5.2	2.4	1.5	0.9
30~99인	정규직	100.0	81.2	67.3	77.4	3.8	7.9	11.0	6.9	4.0
	비정규	100.0	90.7	81.5	86.2	4.5	7.4	1.9	1.2	0.7
100~299인	정규직	100.0	76.1	61.2	71.7	4.3	8.7	15.3	11.0	4.3
	비정규	100.0	90.6	74.4	83.9	6.6	6.4	3.1	2.2	0.9
300인 이상	정규직	100.0	68.3	54.6	62.2	6.1	7.5	24.2	14.0	10.2
	비정규	100.0	89.5	73.7	82.0	7.5	4.2	6.3	3.8	2.5
A. 농림어업	100.0	84.9	75.9	82.2	2.8	2.2	12.9	8.1	4.8	
B. 광업	100.0	76.6	57.1	66.6	10.0	10.9	12.6	11.4	1.2	
C. 제조업	100.0	71.5	61.3	67.4	4.1	11.5	17.0	10.3	6.7	
D. 전기가스업	100.0	72.1	65.2	69.7	2.4	6.0	21.9	11.6	10.3	
E. 폐기물환경	100.0	85.8	70.3	81.7	4.1	6.8	7.4	4.9	2.5	
F. 건설업	100.0	91.6	82.8	89.0	2.6	2.3	6.1	4.0	2.1	
G. 도소매업	100.0	87.9	78.0	84.2	3.8	2.7	9.3	5.4	4.0	
H. 운수업	100.0	77.2	60.5	71.0	6.2	7.7	15.0	10.5	4.5	
I. 숙박음식업	100.0	95.0	90.8	93.7	1.3	2.1	2.9	1.9	1.0	
J. 정보서비스	100.0	87.1	76.3	84.0	3.1	1.7	11.2	6.3	4.9	
K. 금융보험업	100.0	74.2	57.8	68.1	6.2	1.9	23.9	14.6	9.3	
L. 부동산임대	100.0	92.2	82.8	89.5	2.7	2.3	5.5	3.3	2.2	
M. 기술서비스	100.0	86.6	74.5	83.1	3.4	1.9	11.5	6.4	5.1	
N. 사업지원	100.0	85.1	70.0	79.7	5.4	5.8	9.2	6.0	3.2	
P. 교육서비스	100.0	91.9	77.4	89.1	2.8	1.6	6.5	4.7	1.9	
Q. 보건복지	100.0	87.9	71.8	82.3	5.6	4.0	8.0	6.1	1.9	
R. 예술여가	100.0	86.6	77.5	83.9	2.6	5.3	8.2	5.3	2.8	
S. 기타서비스	100.0	91.3	82.1	88.0	3.3	2.1	6.6	4.1	2.5	

주: 고정/변동상여는 2012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대분류 × 사업체규모별 고정상여금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2년 원자료.

〈부표 3〉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향후 1년간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

(단위: 억 원)

	노동비용		직접 및 간접노동비용								
			초과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민간 전체	61,182	40,551	40,070	26,614	11,699	7,696	4,314	2,859	5,099	3,382	
1~4인	738	406	201	110	425	234	52	29	60	33	
5~9인	1,545	923	695	415	616	368	109	65	125	75	
10~29인	5,775	3,558	3,587	2,210	1,312	808	408	251	468	288	
30~99인	9,862	6,117	6,848	4,247	1,519	942	697	432	799	496	
100~299인	13,211	9,142	8,976	6,211	2,207	1,528	932	645	1,096	758	
300인 이상	30,051	20,405	19,764	13,420	5,621	3,816	2,115	1,436	2,551	1,732	
1~4인	정규직	702	397	187	107	409	230	50	28	57	32
	비정규	35	9	14	3	17	4	3	1	3	1
5~9인	정규직	1,469	903	647	402	599	364	104	64	119	73
	비정규	76	20	48	13	16	4	5	1	6	2
10~29인	정규직	5,568	3,464	3,435	2,141	1,288	797	394	245	451	281
	비정규	208	94	152	69	24	11	15	7	17	8
30~99인	정규직	9,403	6,021	6,506	4,176	1,471	932	665	426	762	488
	비정규	459	95	342	71	48	10	32	7	37	8
100~299인	정규직	12,876	9,062	8,726	6,151	2,174	1,520	908	639	1,068	752
	비정규	335	81	250	60	34	8	24	6	28	7
300인 이상	정규직	29,663	20,293	19,507	13,346	5,551	3,796	2,088	1,429	2,518	1,723
	비정규	387	112	257	74	70	20	27	8	33	9
A. 농림어업	56	42	25	18	23	17	4	3	5	3	
B. 광업	291	149	203	104	44	22	21	11	24	12	
C. 제조업	37,999	27,217	27,647	19,802	4,547	3,257	2,683	1,922	3,122	2,236	
D. 전기가스업	711	587	392	324	210	173	50	41	59	49	
E. 폐기물환경	219	120	141	77	45	25	15	8	18	10	
F. 건설업	871	517	446	265	293	174	62	37	71	42	
G. 도소매업	2,400	1,420	1,224	724	811	480	170	100	195	115	
H. 운수업	5,530	3,400	3,624	2,228	1,061	652	390	240	454	279	
I. 숙박음식업	172	99	98	57	48	28	12	7	14	8	
J. 정보서비스	757	505	325	217	316	211	53	36	62	41	
K. 금융보험업	4,096	2,882	1,417	997	2,054	1,445	289	204	336	236	
L. 부동산임대	246	137	113	63	96	53	17	10	20	11	
M. 기술서비스	1,647	1,072	697	454	698	455	116	76	136	88	
N. 사업지원	2,505	1,260	1,606	808	516	259	177	89	206	104	
P. 교육서비스	711	438	188	116	415	255	50	31	58	36	
Q. 보건복지	2,262	1,182	1,499	783	418	218	160	83	185	97	
R. 예술여가	237	155	162	106	38	25	17	11	19	13	
S. 기타서비스	438	244	193	107	179	100	31	17	36	20	

〈부표 4〉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지난 3년간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

(단위: 억 원)

	노동비용		직접 및 간접노동비용								
			초과급여		연차수당		퇴직급여 총당금		사회보험료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민간 전체	158,279	105,492	89,846	59,910	25,757	17,051	31,265	20,928	11,411	7,602	
1~4인	1,205	663	305	168	647	356	162	89	91	50	
5~9인	3,024	1,807	1,256	750	1,113	665	429	256	226	135	
10~29인	11,406	7,026	6,459	3,979	2,362	1,455	1,743	1,074	842	519	
30~99인	22,116	13,716	13,780	8,546	3,056	1,895	3,672	2,277	1,608	997	
100~299인	33,669	23,300	20,087	13,901	4,940	3,419	6,189	4,283	2,453	1,697	
300인 이상	86,860	58,980	47,959	32,565	13,639	9,261	19,071	12,950	6,191	4,204	
1~4인	정규직	1,177	656	295	165	634	353	159	88	89	49
	비정규	28	7	10	3	13	3	3	1	2	1
5~9인	정규직	2,955	1,789	1,214	739	1,099	661	422	254	221	134
	비정규	69	18	42	11	14	4	7	2	5	1
10~29인	정규직	11,217	6,941	6,324	3,918	2,341	1,445	1,725	1,066	827	512
	비정규	189	85	135	61	21	10	18	8	15	7
30~99인	정규직	21,583	13,606	13,394	8,466	3,002	1,884	3,621	2,267	1,566	988
	비정규	533	111	386	80	54	11	51	11	42	9
100~299인	정규직	33,265	23,203	19,796	13,831	4,901	3,409	6,148	4,273	2,420	1,690
	비정규	403	97	291	70	39	9	41	10	32	8
300인 이상	정규직	86,332	58,828	47,625	32,469	13,548	9,235	19,012	12,933	6,148	4,191
	비정규	528	152	334	96	91	26	60	17	43	12
A. 농림어업	118	88	43	32	40	30	27	20	8	6	
B. 광업	788	403	463	237	100	51	170	87	55	28	
C. 제조업	94,094	67,394	60,347	43,223	9,926	7,109	17,007	12,181	6,814	4,881	
D. 전기가스업	2,483	2,051	1,052	869	563	465	710	586	158	131	
E. 폐기물환경	542	297	315	172	101	55	87	47	40	22	
F. 건설업	1,292	767	605	359	397	236	194	115	96	57	
G. 도소매업	4,783	2,830	2,240	1,325	1,485	879	702	415	357	211	
H. 운수업	14,177	8,717	8,133	5,001	2,381	1,464	2,643	1,625	1,020	627	
I. 숙박음식업	193	112	105	61	51	30	22	13	15	9	
J. 정보서비스	1,771	1,180	673	448	654	436	315	210	129	86	
K. 금융보험업	12,084	8,502	3,472	2,443	5,031	3,540	2,759	1,941	822	578	
L. 부동산임대	498	277	213	119	180	100	67	37	38	21	
M. 기술서비스	4,047	2,635	1,537	1,001	1,540	1,003	670	437	299	195	
N. 사업지원	5,194	2,613	3,069	1,544	985	496	746	375	393	198	
P. 교육서비스	1,551	955	354	218	782	482	304	187	110	68	
Q. 보건복지	4,553	2,379	2,789	1,458	777	406	641	335	345	180	
R. 예술여가	373	244	237	155	56	37	51	34	28	18	
S. 기타서비스	851	474	342	191	317	177	129	72	63	35	

〈부표 5〉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향후 1년 & 지난 3년간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

(단위: 억 원)

	노동비용		직접 및 간접노동비용								
			초과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총담금		사회보험료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고정 상여 기타 수당	고정 상여	
민간 전체	219,461	146,042	129,916	86,523	37,456	24,747	35,579	23,788	16,510	10,984	
1~4인	1,943	1,069	506	278	1,072	590	214	118	151	83	
5~9인	4,569	2,730	1,951	1,166	1,729	1,033	538	321	351	210	
10~29인	17,181	10,584	10,046	6,188	3,673	2,263	2,151	1,325	1,310	807	
30~99인	31,978	19,833	20,628	12,793	4,575	2,837	4,369	2,710	2,407	1,493	
100~299인	46,880	32,442	29,063	20,112	7,148	4,947	7,121	4,928	3,549	2,456	
300인 이상	116,911	79,385	67,723	45,985	19,260	13,078	21,186	14,386	8,742	5,936	
1~4인	정규직	1,879	1,053	482	272	1,043	582	208	116	146	82
	비정규	63	16	24	6	29	7	5	1	5	1
5~9인	정규직	4,423	2,692	1,860	1,142	1,698	1,025	525	318	340	207
	비정규	145	38	90	24	31	8	12	3	12	3
10~29인	정규직	16,784	10,405	9,759	6,059	3,628	2,243	2,118	1,310	1,279	793
	비정규	397	179	287	129	45	20	33	15	32	14
30~99인	정규직	30,986	19,627	19,900	12,642	4,472	2,816	4,286	2,692	2,328	1,476
	비정규	992	206	727	151	102	21	83	17	79	16
100~299인	정규직	46,141	32,265	28,522	19,982	7,075	4,929	7,056	4,912	3,488	2,441
	비정규	739	178	541	130	73	18	65	16	60	14
300인 이상	정규직	115,996	79,121	67,131	45,815	19,098	13,031	21,100	14,361	8,666	5,914
	비정규	915	264	591	170	161	46	87	25	76	22
A. 농림어업	173	130	68	51	63	47	31	23	13	9	
B. 광업	1,079	552	666	341	144	74	190	97	78	40	
C. 제조업	132,093	94,611	87,994	63,025	14,473	10,366	19,690	14,103	9,936	7,117	
D. 전기가스업	3,194	2,638	1,444	1,193	773	638	760	628	217	179	
E. 폐기물환경	762	416	456	249	146	80	102	56	58	31	
F. 건설업	2,162	1,284	1,050	624	689	409	256	152	167	99	
G. 도소매업	7,183	4,250	3,464	2,050	2,296	1,359	871	516	552	327	
H. 운수업	19,706	12,117	11,758	7,230	3,442	2,116	3,033	1,865	1,474	906	
I. 숙박음식업	364	211	203	117	99	57	34	20	29	17	
J. 정보서비스	2,528	1,684	998	665	971	647	368	245	191	127	
K. 금융보험업	16,180	11,384	4,889	3,440	7,085	4,985	3,049	2,145	1,158	814	
L. 부동산임대	744	414	327	182	275	153	85	47	58	32	
M. 기술서비스	5,694	3,708	2,234	1,455	2,239	1,458	787	512	435	283	
N. 사업지원	7,698	3,873	4,676	2,352	1,501	755	923	464	599	301	
P. 교육서비스	2,262	1,393	542	334	1,197	737	355	218	168	104	
Q. 보건복지	6,814	3,561	4,288	2,241	1,195	625	801	419	530	277	
R. 예술여가	609	399	400	262	94	62	68	45	47	31	
S. 기타서비스	1,288	718	535	298	496	276	160	89	99	55	

〈부표 6〉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향후 1년 근로자 1인당 임금변화율

(단위: 천 명, 천 원/월, %)

	근로자수	월임금총액		월임금총액		월임금총액	
		기존	고정상여 /기타수당	임금 증가율	고정상여	임금 증가율	
민간 전체	12,447	2,527	2,561	1.4	2,550	0.9	
1~4인	3,099	1,505	1,507	0.1	1,506	0.1	
5~9인	1,607	2,136	2,143	0.3	2,140	0.2	
10~29인	2,362	2,430	2,447	0.7	2,441	0.4	
30~99인	2,137	2,680	2,713	1.2	2,700	0.8	
100~299인	1,450	3,062	3,126	2.1	3,106	1.5	
300인 이상	1,793	4,154	4,272	2.8	4,234	1.9	
1~4인	정규직	1,844	1,832	1,835	0.2	1,834	0.1
	비정규	1,254	1,025	1,025	0.0	1,025	0.0
5~9인	정규직	1,290	2,335	2,343	0.4	2,340	0.2
	비정규	317	1,329	1,330	0.1	1,329	0.0
10~29인	정규직	1,810	2,732	2,755	0.8	2,746	0.5
	비정규	552	1,441	1,443	0.2	1,442	0.1
30~99인	정규직	1,733	2,917	2,957	1.4	2,943	0.9
	비정규	403	1,662	1,671	0.5	1,664	0.1
100~299인	정규직	1,224	3,309	3,387	2.4	3,365	1.7
	비정규	226	1,721	1,731	0.6	1,723	0.1
300인 이상	정규직	1,549	4,513	4,657	3.2	4,613	2.2
	비정규	244	1,878	1,889	0.6	1,881	0.2
A. 농림어업	30	2,504	2,517	0.5	2,514	0.4	
B. 광업	14	3,070	3,220	4.9	3,147	2.5	
C. 제조업	3,186	2,882	2,966	2.9	2,942	2.1	
D. 전기·가스업	55	4,904	4,995	1.9	4,979	1.5	
E. 폐기물·환경	63	2,462	2,486	1.0	2,475	0.5	
F. 건설업	1,010	2,333	2,339	0.3	2,336	0.2	
G. 도소매업	1,551	2,204	2,215	0.5	2,210	0.3	
H. 운수업	597	2,654	2,720	2.5	2,695	1.5	
I. 숙박음식업	925	1,248	1,250	0.1	1,249	0.1	
J. 정보서비스	423	3,352	3,365	0.4	3,360	0.3	
K. 금융보험업	470	4,399	4,460	1.4	4,442	1.0	
L. 부동산임대	333	1,797	1,802	0.3	1,800	0.2	
M. 기술서비스	739	3,483	3,499	0.5	3,494	0.3	
N. 사업지원	740	2,148	2,172	1.1	2,160	0.6	
P. 교육서비스	604	2,532	2,540	0.3	2,537	0.2	
Q. 보건복지	1,010	2,182	2,197	0.7	2,190	0.4	
R. 예술·여가	166	1,718	1,729	0.6	1,725	0.4	
S. 기타서비스	531	1,782	1,788	0.3	1,785	0.2	